

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

본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계약서(이하 “본 계약서”)은 2023년 11월 [30]일(이하 “본 계약 체결일”) 주식회사 이베데스다제육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위탁자”)와 에이치엘리츠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수탁자”) 사이에서 체결된다.

전 문

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사이에 체결된 2023년 10월 10일자 자산관리위탁계약서(이하 “기존 계약서”)과 관련하여, 기존 계약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한다.

제 1 조 (변경내용)

기존 계약서 별지 1. 수수료 제 2 항, 제 3 항 및 별지 2. 제 1 항 제 3 호를 신설하며, 별지 2. 제 2 항 일부를 변경한다.

기존 계약서	본 계약서
별지 1. 수수료 (신설)	<p>별지 1. 수수료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“위탁자”는 제 1 항의 수수료 지급을 중단한다.</p> <p>1.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“수탁자”가 임대부진에 대한 대책(시장상황, 이행기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판매촉진대책수립 등)을 60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</p> <p>2. “위탁자”의 모리츠로부터 수수료 지급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</p> <p>③ 제 2 항에 따라 지급 중단된 수수료는 제 2 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“갑”의 모리츠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자산관</p>

	리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, 일괄지급한다.
별지 2. 계약의 해지 (신설)	별지 2. 계약의 해지 3. “위탁자”는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서(자리츠용) 제28조에 따른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.
별지 2. 계약의 해지 ② 해지의 절차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 1.에 기재된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.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.	별지 2. 계약의 해지 ② 해지의 절차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 1.에 기재된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. 계약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발생한다.

제 2 조 (기존 계약과의 관계)

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.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. 본 계약의 내용과 기존 계약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.

(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다음 페이지에)



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계약서 2 부를 작성하고 각자 적법한 서명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.

“위탁자”

주식회사 이베데스다제육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 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
대표이사 박영희 (인)



“수탁자”

에이치엘리츠운용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, 2802 호(삼성동, 트레이드타워)
대표이사 조성진 (인)

